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15.10.15.>

##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([]폐지 []휴지 []재개)신고서

※해당되는 []에 √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		처리기간	5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l일 (남, 여)		하번호	
	주소						
시설 개요	시설의 명칭			사업종별			
	소재지						
	시설장 성명		생년월일 (남, 여)		전호	화번 <i>호</i>	
	(폐지·휴지·재개)연월일			휴지기간			

「정신보건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([]폐지,[]휴지,[]재개)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

(서명 또는 인)

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1. 해당 시설의 폐지·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1부(법인만 해당합니다)
2.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수수료
참부서류
3.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없음
4.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1부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